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하베스트 선취형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2. 효력발생일

- 2012.09.07

3. 변경사유

-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변경
-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운용전문인력, 투자신탁 재무정보,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운용실적, 집합투자업자의 요약재무정보, 운용자산 규모 등 통계자료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정정
- 펀드용어의 정리 축약

4. 신탁계약서 변경 내용

현 행	변 경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⑥(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⑬(생략)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현행과 같음)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⑥(현행과 같음)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⑬(현행과같음)

5.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1.09.30기준	2012.08.17기준
5.투자운용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11.09.30 기준	부책임운용인력사항의 추가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경 내역	-	자구 수정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등급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등급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칸서스자산운용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구분 /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 연 0.654% 판매회사 보수 / 연 1.00% 신탁업자 보수 / 연 0.03%	구분 /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 연 0.654% 판매회사 보수 / 연 1.00% 신탁업자 보수 / 연 0.03%

<table>
<tr><td></td><td><table>
<tr><td>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td><td>연 0.016%</td></tr>
<tr><td>기타비용</td><td>연 0.015%</td></tr>
<tr><td>총 보수.비용</td><td>연 1.715%</td></tr>
<tr><td>증권 거래비용</td><td>연 0.835%</td></tr>
</table></td><td><table>
<tr><td>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td><td>연 0.016%</td></tr>
<tr><td>기타비용</td><td>연 0.009%</td></tr>
<tr><td>총 보수.비용</td><td>연 1.709%</td></tr>
<tr><td>증권 거래비용</td><td>연 0.476%</td></tr>
</table></td></tr>
<tr><td><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td><td><table>
<tr><th>구분</th><th>1 년</th><th>3 년</th><th>5 년</th><th>10 년</th></tr>
<tr><td>하베스트선취형</td><td>225</td><td>601</td><td>1,016</td><td>2,250</td></tr>
</table></td><td><table>
<tr><th>구분</th><th>1 년</th><th>3 년</th><th>5 년</th><th>10 년</th></tr>
<tr><td>하베스트선취형</td><td>224</td><td>599</td><td>1,013</td><td>2,241</td></tr>
</table></td></tr>
<tr><td>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정보</td><td>2011.09.30기준</td><td>2012.08.17기준</td></tr>
<tr><td>1. 요약 재무정보</td><td>서식개정에 따른 신설 문구</td><td>※ 정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td><td>2011.09.30기준</td><td>2012.08.17기준</td></tr>
<tr><td>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td><td>2011.09.30기준</td><td>2012.08.17기준</td></tr>
<tr><td>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td><td>2011.09.30기준</td><td>2012.08.17기준</td></tr>
<tr><td>다.최근 2개 사업년도 요약 재무내용</td><td>2011.09.30기준</td><td>2012.08.17기준</td></tr>
</table>

라.운용자산 규모	2011.09.30기준	2012.08.17기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참고 : 펀드용어의 정리	(생략)	펀드용어 정리중 본 투자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용어 삭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서식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